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-63호

우편법시행령 제5조 및 제9조의2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년 12월 1일

우정사업본부장

국가기초구역 체계로의 우편번호 개편

1. 개편목적

o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우편번호로 사용

《 관련 법조항 》

[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3항]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, 우편구역,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.

o 국가기초구역은 통계, 소방, 치안, 우편 등 공공기관이 관할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사용되어 정보 공유를 통한 국가차원의 효율성 증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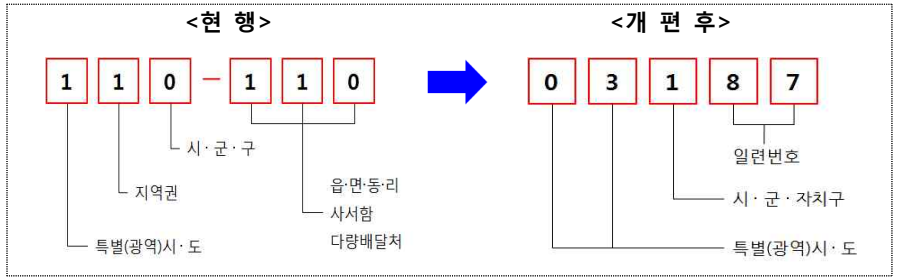
2. 개편내용

o 읍·면·동 및 집배원별 담당구역을 기준으로 부여된 기존 6자리 우편번호를 도로, 하천, 철도 등의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한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5자리 구역번호로 개편

- 5자리 중 앞 3자리로 특별(광역)시·도와 시·군·자치구를 구별
- 뒤 2자리는 해당 시·군·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로 구성

< 새우편번호 구성체계 >

(예시)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, 광화문우체국



o 새우편번호 개수 : 34,349개

- 새우편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 : 6,030,394건(2014.10.27. 기준)

※ 지역별 세부내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(www.koreapost.go.kr) 참조

- 현행 6자리 우편번호와는 달리 다량배달처와 사서함에 별도의 새우편번호를 부여하지 않음

※ 다량배달처 및 사서함의 경우, 건물 혹은 시설이 위치한 국가기초구역의 구역번호(새우편번호)를 사용

3. 새우편번호 사용·변경 등

o 새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(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3항)에 따라 조정됩니다.

o 새우편번호별 주소정보는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매칭테이블 자료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o 기존 6자리 우편번호와 5자리 새우편번호는 번호체계와 의미하는 지역이 서로 상이한 관계로 병행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.

4. 시행일 : 2015. 8. 1.

5. 참고사항

o 국가기초구역 및 주소정보(도로명주소-지번주소)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부칙

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.